<별지 제5호 서식>

##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

□ 대리인

성 명: 예금보험공사

주 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30

본인은 다음 사항의 권한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.

- 다 음 -

본인이	년	월	일에	의 (금융회사명)	계좌로 송금한
급		Ç	원정(₩	) 중에서 착오송금한 금	원정
(₩	)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양도통지				

년 월 일

□ 본인 (위 임 인)

성 명:

(인 또는 서명)

주 소:

- ※ 신주소를 기재하는 경우 도로명까지, 구주소를 기재하는 경우 동까지만 기재
- ※ 착오송금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날인 또는 서명하고,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인감을 날인

## 안 내 말 씀

안녕하십니까. 예금보험공사입니다.

위의 채권양도인이 귀하의 계좌로 착오송금하여 금융회사를 통하여 유선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처상이, 무응답 등의 사유로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공사에 착오송금반환지원을 신청하였습니다. 이에 따라 반환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공사가 양수하여 동 양도통지서를 송부하오니, 귀하의 계좌로 위 착오송금액이 입금된 내역을 확인하신 후 안내드린 공사계좌로 기한 내에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공사계좌로 전액반환이 확인되면 공사의 반환지원절차는 종결되며, 반환과정에서 이체수수료가 발생한 경우 반환 당일에 증빙자료와 환급받을 계좌정보를 이메일(kmrs@kdic.or.kr) 또는 팩스(02-758-0270)로 보내주시면 환급하여 드립니다.

입금받은 금원이 착오송금이 아닌 경우 자진반환 기한 내에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상의 착오송금반환 지원정보시스템(kmrs.kdic.or.kr) [착오송금 수취인-이의제기] 메뉴에서 이의제기 하실 수 있으며, 자진반환기한 내에 미반환할 경우 법원을 통한 지급명령절차가 진행되어 추가적인 부담(법적절차비용, 지연이자 등)이 발생하게 됩니다.

귀하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
※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(kmrs.kdic.or.kr) 착오송금 수취인 메뉴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가능

※관련문의: 1588-0037